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6. 9. 20.

발 의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경위

2006.9.20. 제12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강성국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개정이유

심도있는 의안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의원별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의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함.(안 제2조)
- 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제2항)
- 다. 본회의는 회기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음.(안 제65조의2제1항)
- 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함.(안 제65조의2제2항)
- 라.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65조의2제3항)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2006.5.24 법률제7957호)제63조

5. 개정규칙(안) : 별첨

6.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7.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중 “의원”을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중 “위원장”을 “위원장 또는 의원”으로 하고,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를 “표결한다”로, “설명하여야 한다”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한다”로 한다.

제6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구정에 대한 질문) ①의원은 회기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안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회의규칙</u>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u>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등록)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u>	제2조(등록) <u>의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u>
제3조(의석배정) ① <u>의원의</u> -----	제3조(의석배정) ①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u>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생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현행과 같음)
②-----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u> -----	②----- <u>법</u> -----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신 설)	② <u>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24조(안전심의) ① <u>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전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전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u>	제24조(안전심의) ①----- ----- <u>위원장 또는 의원</u> ----- ----- <u>표결한다.</u> ----- ----- ----- <u>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한다.</u> -----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5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③(생략)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5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③(현행과 같음) ④(삭제) 제65조의2 (구정에 대한 질문) ①의원은 회기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